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
- 의안번호 : 제1101호
- 발의일자 : 2023년 8월 14일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2. 제 안 이 유

-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, 공원,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 및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. 이에 반려동물 주의사항 안내포지 및 펫파킹 설치를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(안 제2조의6호 신설).
- 나. 시장이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이용 편의성 보장을 위해 법 제 49조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 등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반려동물 안내포지를 공원에 설치하게 함(안 제22조의2의제1항 신설).
- 다. 시장이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에 반려동물의 목줄 등을 걸어두거나 반려동물이 따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의2의제2항 신설).

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동물보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, 공원, 운동시설 등에 반려동물의 출입 및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주의사항 안내표지 및 펫파킹 설치를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¹⁾와 법 시행령 제50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,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법 제1항제4호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으며, 제2항제2호에는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관련 금지행위의 준수사항을 기재한 안내표지를 공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이 빈번해진 공원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,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임.
- 서울시는 ‘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’ 표지판에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및 제2항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, 「동물보호법」 제13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, 「서울특별시

1) 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 5. 22., 2021. 4. 13.>

1.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2.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
3.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4.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)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5.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·유통·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」 제10조제1항의 사항을 담고 있음.[붙임1참조]

- 특히, 지난 2018년²⁾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위반 과태료에 대해 「동물보호법」 적용 시 제101조제4항³⁾에 따라 50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이를 반영하고 안내하기 위해 시공원 등 총 86개 공원에서 안내판 456개를 정비한 바 있음.
- 안 제22조의2제2항은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에 반려동물이 따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(펫파킹)의 정의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
- 또한 현재 「동물보호법」 제16조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제1항 따르면 등록대상동물⁴⁾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, 제2항에서는 외출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목줄 착용, 위해 예방, 인식표 착용, 배설물 수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이는 동물의 유기·유실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동물보호 정책의

2)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-4012(2018.7.11.), 도시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시 과태료 적용 관련 안내

3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**5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한다.

1.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
2.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3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
4. **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**

5.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

6.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

7.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당시 「동물보호법」 제13조제2항

4)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(정의) 8. “등록대상동물”이란 **동물의 보호, 유실·유기(遺棄) 방지, 질병의 관리,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**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

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4조(등록대상동물의 범위) 법 제2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.

1.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
2.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

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공원 내 펫파킹 시설을 조성하고 반려동물⁵⁾이 한시적으로 소유자등이 없이 따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「동물보호법」의 취지를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

5)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(정의)

7. “반려동물”이란 반려(伴侶)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조(반려동물의 범위) 법 제2조제7호에서 “개,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”이란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.

[붙임1]

□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문구(사례)



□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문구(사례)

